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0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정성호·한정애·안태준

김정호 · 김남희 · 문진석

이연희 • 윤후덕 • 민병덕

임미애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규정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 하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징계의결"을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징계의결</u> 이 요구 중인 경우	2. <u>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u>		
	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